

유럽의 PL의 생성과 발전

글 · 홍성하 대표이사 오웬스코닝(주) 아태본부

1. EU통일지침의 제정배경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유럽통합을 염두에 두고 각 국가간의 법통일의 필요성을 이유로 시작되었다. EU회원국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자의 책임을 전통적인 과실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현재는 EU로 변경되었으며, 지침 제정당시에는 EC이었다.

EU회원국간의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제의 차이는 제조자의 제품비용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EU지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을 저해함으로써 EU지역내의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EU지역 내 시장통합작업의 일환으로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촉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U통일지침의 제정노력이 시작되었다.

지침의 정식명칭은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U가맹국의 법률, 명령 및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1985년 7월 25일의 각료이사회지침”(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이다.

EU에서는 1968년부터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입법화를 위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EU위원회(The Commission)는 1974년 8월과 1975년 7월, 두 번의 예비초안의 공표를 거쳐 1976년 7월 제1차 지침안을 제안하고, 그 후 1979년 9월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와 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의견을 가미한 수정지침안을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에 제출하였다.

각료이사회는 이 수정지침안을 심리하였으나 1차 농수축산물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할지 여부, 물적 손해의 포함여부, 책임한도액의 설정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거듭하다가 1985년 5월 타협적인 형태의 새로운 수정지침안이 EU이사회에 제출되어 마침내 동년 7월 25일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Directive)이 채택되었다.

2. EU 지침의 주요내용

1) 무과실책임의 원칙

제조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제조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이를 불문한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제조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제1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라는 문구가 없고 제4조의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규정도 이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지침 전문에서는 [특히 전문적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제조물의 범위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은 적용 대상이 된다. 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차 농산물 이를테면 축산물, 해산물 포함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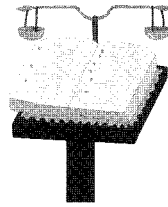
제2조에서 [제1차 농산물이란 제1차 가공을 한 제품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및 해산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지침 전문에서는 농업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당해제품에 결함을 일으킬만한 공업적 성질을 가지는 가공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해 공업적 성질의 가공을 하게 되면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각 가맹국은 선택조항으로 국내법으로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을 가지고 있다.

3) 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이나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모두 제조자에 해당한다. 완성품의 제조자는 그 제조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구성부품 또는 원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완성품에 결함이 발생하고 그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완성품의 제조자는 구성부품의 제조자 또는 원재료의 제조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EU지역 내에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하는 자]도 제조자로 간주된다. 수입업자는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적 성격이든 상업적 성격이든 불문하고 개인적 필요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항공회사가 자기의 영업, 즉 항공사업을 위해 비행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는 피해자가 EU지역 외의 외국의 제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입업자를 제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입업자가 EU국가 외의 외국으로부터 값싼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 간에 경쟁관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한가지 이유이다.



EU지역 내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다른 회원국의 제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은 1982년 민사관할권 및 판결법(Civil Jurisdiction and Judgements Act 1982)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고는 다른 회원국의 제조자를 상대로 자기 나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의 나라의 법원에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제조물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조자는 알 수 있으나 수입한 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익명의 제조물을 사용함으로써 입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4) 입증책임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EU지침 제4조에는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것을 두고 독일의 타쉬너(Taschner)는 “이 입증책임의 규제 방법은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마그나 카르타이다”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EU지침 제7조에서 제조자가 다음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규정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사항 중 (b)호에서 “여러 상황을 참작할 때 손해를 야기시킨 결함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된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결함이 사후에 발생하였

다고 하는 개연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결함,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는 결함은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든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고전적인 증명책임의 분배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표현증명 또는 사실추정원칙에 의해 원고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각 가맹국의 법원의 운용과 관련된 것이며 본 조는 그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5) 연대책임의 원칙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함의 판단기준

제조물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조물의 사용,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다만 나중에 보다 우수한 제품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유통된 시기는 결함유무의 판단기준시점이 된다. 완성품의 경우 제조자가 판매를 위하여 자유의사에 의하여 제조물을 유통업자에게 보낸 시점을 말한다. 그리고 부품인 경우에는 완성품 제조자에게 납품된 시점, 원재료인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납품된 시점을 말한다.

7) 제조자의 면책사유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지만 다음의 여섯 가지중에서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되는 것으로 하여 제조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첫째,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이다. 예컨대,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함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고용인은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의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가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그 제품이 판매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며 또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제조, 공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넷째, 그 제품의 결함이 당국에서 정한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강제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 즉 최고 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래서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고 또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결함제조물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이나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을 말하며, 각 가맹국은 그 판단에 따라 선택조항으로 국내법으로 개발위험에 관해서도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여섯째, 부품제조자의 경우에는 그 부품을 조립한 최종제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최종제품 제조자의 지시에 의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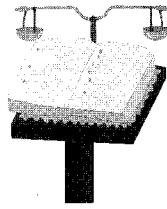
8) 제3자와 피해자의 과실 등

손해가 제품의 결함과 함께 제3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한 조항이다. 이 경우 제3자는 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므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의 책임여부, 그 책임의 범위 및 구상권(求償權 : claim for compensation) 등에 대해서는 각 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가 제품의 결함과 함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의 책임은 경감 또는 면제된다.

9) 손해의 범위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인신손해 및 재산손해이다. 인신손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배상액에 제한이 없으나, 각국은 책임총액의 제한을 선택조항(option)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재산손해의 경우 제품 자체의 손해는 배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적인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에 발생한 500 ECU(유럽통화단위)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영업용 재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제품 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된다. 이는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해서 소액청구가 빈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자료 등의 무형손해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의 국내법에 선택조항으로 그 취급을 위임하고 있다. ECU란 European Currency Unit의 약칭으로 유럽 통화제도(EMS)에 있어서 공통의 계산단위이다. ECU의 가치는 매일 결정되지만 지침은 각국의 국내법에서 그 국내통화단위로 명문화할 때의 환산기준시(基準時)를 지침의 채택일인 1985년 7월 25일로 정하였다.

10) 제소기간 및 소멸시효

피해자는 손해와 결함 및 제조자의 신원을 알 날 또는 합리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손해의 원인이 된 제품이 유통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11) 특약에 의한 책임제한 등의 금지

제조자는 피해자와의 특약에 의해 자신의 책임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없다. 제조자들간의 관계는 본조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책임의 제한 또는 배제금지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만 작용한다.

12)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조자의 책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가맹국은 필요에 따라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의 제품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상 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총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액이 7,000만 ECU 이상이어야 한다. 즉 지침은 개발위험을 제조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대신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각 가맹국이 인신손해에 한하여 7,000만 ECU 보다 낮지 않은 범위에서 책임한도액을 제한하는 국내입법도 가능하다는 선택조항을 두고 있다.

13) 제조물책임의 중복적용의 가능성

지침이 통보된 시점에 존재하는 계약상 또는 계약 외의 책임에 관한 법규정 혹은 특별책임제도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각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자유로이, 지침에 의해 제정되는 국내법, 계약책임법, 비계약책임법 즉 불법행위법 및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책임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독일은 EU회원국 전체에서 유일하게 의약품이라는 특정분야에 1976년 개정약사법이 있다.

본 지침에 근거하는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법에는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청구는 실익이 있다. 예를 들면, 인적손해에 있어서 위자료청구, 동일결함이나 동종품목에 의한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총액 제한, 영업이나 직업상의 물건 또는 공적인 물건의 배상대상으로부터의 제외, 제1차 농산물이거나 수렵물에 의한 피해, 결함있는 제조물 자체의 피해, 물적손해에 있어서 500ECU의 자기부담금, 판매업자나 수리업자의 책임추궁,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경과후의 소(lawsuit) 제기 등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청구권은 실익이 있다.